

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1554호
- 나. 제 안 자 : 김정태 의원 외 12명
- 다. 제안일자 : 2020년 5월 25일
- 라. 회부일자 : 2020년 5월 29일

2. 제안이유

동북아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「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에 따라 2009년 1월 지정된 서울 금융중심지 내 금융기관 유치에 위한 금융기관 서울사무소 및 금융산업 종사자, 혁신금융서비스 종사자 간의 교류·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종사자 네트워킹 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그 동안의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혁신금융서비스,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,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정의 추가 (안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제4호, 같은 조제5호).

나. 국내외 투자유치 환경조성을 위한 국제행사(국제금융컨퍼런스) 개최 등 추진근거 마련(안 제1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제4호).

다. 국내외 금융기관 투자유치 활성화 및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조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 마련(안 제17조).

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서울 금융중심지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의 조성 및 운영, 혁신금융서비스(핀테크)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음.

나. 여의도 금융중심지 조성 현황

- 정부(금융위원회)는 금융기관의 집적 도모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0년 1월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 지역 일대를 금융중심지(국제금융지구)로 지정·고시하였음.
- 이에 따라 서울시는 여의도 일대(3.98km²)를 국제 금융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서울국제금융센터(SIFC) 건립,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, 외국인 친화적인 글로벌 생활환경 조성,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 운영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.

< 서울국제금융지구 및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범위 >



- 또한, 금융산업 육성 추진계획의 수립, 금융중심지에서 활동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, 금융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2015년 7월에 제정하여 시행 중임.
- 현재 서울국제금융센터에는 금융기관 57개사와 금융지원기관 44개사가 입주해 있으며,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서울핀테크랩에는 70개사(국내 46, 해외 24)가 입주해 있음.

다. 용어의 정의 (안 제2조)

- 안 제2조는 ‘혁신금융서비스’, ‘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’, ‘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’의 뜻을 명확히 하고자 정의 사항을 추가하고 있음.

<개정안 관련 규정>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"서울 금융중심지"란 .. (생략) 2. "금융기관"이란 .. (생략).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3. "임시사무소"란 .. (생략) 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"서울 금융중심지"란 .. (생략) 2. "금융기관"이란 .. (생략). 3. "혁신금융서비스"란 「<u>금융혁신지원 특별법</u>」 제2조제4호에 따라 <u>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·방식·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.</u> 4. "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"란 「<u>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</u>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자 중 주된 사업분야가 혁신금융서비스인 자를 의미한다. 5. "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"이란 <u>시</u>가 제1호의 서울 금융중심지 내 <u>금융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의미한다.</u> 6. "임시사무소"란 .. (생략)

- 안 제3호의 혁신금융서비스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과 IT융합 (Fin-Tech) 등의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정의한 것으로 「금융혁신지원 특별법」의 정의 규정(제2조제4호)과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음.
- 안 제4호의 ‘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’는 혁신금융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와 창업 7년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.

- 안 제5호의 ‘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’은 서울핀테크랩과 금융 종사자 네트워크 허브, 여의도 금융거점 서울사무소 등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근거 조항이 안 제17조에 신설됨에 따라 이들 시설의 정의를 추가하는 것임.

라. 교육훈련자금 지원 대상에서 ‘서울금융전문대학원’ 제외(안 제7조제2항)

- 안 제7조제2항 단서규정은 교육훈련자금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서울시가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교육훈련 자금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음.
- 서울시는 금융기관이 내국인을 신규 고용한 후 경영·금융전문 대학원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1명당 6개월의 범위에서 최대 300만원까지의 교육훈련자금을 지원하고 있음.

<금융기관 보조금 지원기준 및 한도>

항 목	지원 기준 및 방법	지원한도
사업용 설비 설치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분의 100이내 ※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는 기관당 100분의 250이내 	기관당 10억원 이내 (거래소 및 지역본부는 25억원 이내)
신규고용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(1명당 월 보수액의 50/100) 	기관당 2억원 이내
교육훈련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(1명당 교육비의 50/100) 	기관당 6천만원 이내

- 그러나 금융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조성 중인 서울금융전문대학원이 올해 9월 개원하면 운영기관(KAIST 디지털금융 교육그룹)이 교육경비 1천 2백만원 중 50%를 교육생들에게 지원하게 되어 교육훈련

자금의 이중지원 문제가 발생하게 됨.

<서울금융전문대학원 개요>

□ 사업 개요

- 사업기간 : 2020~2023년(4년 간) ※ '20년 하반기 개강 예정
- 사업위치 : 서울국제금융센터 One IFC 17층(3,061㎡)
- 사업예산 : 4년 간 190억원(시비 100, 국비 90)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계	2020	2021	2022	2023
소 계	19,000	4,000	5,000	5,000	5,000
시 비	10,000	2,500	2,500	2,500	2,500
국 비	9,000	1,500	2,500	2,500	2,500

- 교육대상 : 금융회사 재직자, 핀테크 (예비)창업자 및 관련 기관 종사자 등
- 교육과정 : 디지털금융 학위(80명/년) 및 비학위 과정(160명/년) 운영
- 교육경비 : 총 1,200만원(1인 기준), 국비 및 KAIST 50% 지원
- 운영기관 : KAIST 디지털금융 교육그룹(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, 2020. 3)

- 따라서, 개정안과 같이 서울시가 지정한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에는 교육훈련자금 지원을 배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예산의 중복지원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.

마.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등 추진 사업 근거 규정 신설(안 제15조제1항제3호·제4호)

- 개정안은 금융산업 발전과 외국 금융기관 유치에 위해 혁신금융 서비스 창업자에 대한 해외진출과 투자유치 지원, 서울국제금융 컨퍼런스¹⁾ 등의 국제회의 개최 사업에 대한 시행 근거 규정을

1) 국제금융도시 서울의 미래 성장방향을 모색하고,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서울 유치를 위해 2006년부터 서울시와 금융감독원이 행사를 공동 주최하여 10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있으며,

마련하고 있음.

- ICT 발전과 모바일의 급속한 확산, 소비자의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핀테크가 금융산업 혁신 대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핀테크 창업자의 해외진출과 투자유치를 지원(제3호)해 서울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로 보임.
- 실제로 글로벌 핀테크 거래금액은 2017년 3조 6천 356억 달러에서 2023년 9조 8천 24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²⁾된다는 점에서 핀테크와 같은 혁신금융서비스의 출현을 유도하고 성장·발전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.
- 또한, 그동안 정책적 목적에서 추진해 온 금융정책 발전을 위한 국제회의 및 세미나 등 개최(제4호) 사업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했던 사항을 보완하여 서울 금융산업 육성과 투자유치 환경 조성 효과를 극대화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.
- 다만, 사업 근거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를 2006년부터 지속해오다가 뒤늦게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됨.

2020년 현재 총 9회 개최됨.

2) 독일 시장조사 기관 스타티스타(2019).

바. ‘서울금융전문대학원’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원 근거 신설(안 제16조제2항)

- 안 제16조제2항은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대학·연구기관 등에 지원하는 범위를 현행 ‘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’에서 ‘행정적·재정적인 지원’으로 확대하고 있음.
- 이는 서울금융전문대학원 운영기관에 대해 다양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2021년도부터 인건비를 포함한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임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.
- 확대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통해 서울금융전문대학원이 핀테크 산업 발전을 견인하고,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구심점이 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- 참고로 「지방재정법」(제17조제1항제2호)에서 ‘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’와 「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제14조의2제1항제2호)에서 ‘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부담하는 경우’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이 가능하므로 서울금융전문대학원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음.

사. ‘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’ 조성 및 운영(안 제17조)

- 안 제17조는 금융산업의 육성과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▶ 금융중심지 내 국내외 금융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, ▶ 금융기관

및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설, ▶ 혁신금융 서비스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등의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의 조성 및 운영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음.

<개정안 관련 규정>

현행	개정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17조(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) ① 시장은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서울 금융중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서울 금융중심지 내 국내외 금융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</u> <u>2. 금융기관 및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설</u> <u>3.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</u> <u>4. 그 밖에 시장이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서울 금융중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</u> <p><u>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관리·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금융기관,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등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단, 시장은 정책 목적을 고려하여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</u></p>

현행	개정안
	<p><u>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 운영위원회의 구성·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

○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은 현재 서울시가 조성 중이거나 운영 중인 다음의 시설에 해당됨.

- 금융기관 서울사무소(제1호)는 주요 금융기관이 부산, 전주 등으로 이전하면서 서울의 금융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▶ 입주기관 유치, ▶ 비즈니스 지원, ▶ 기업 간 교류 지원을 위한 오피스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임.

- 금융종사자 네트워크 허브(제2호)는 국내외 금융 관련 창업자·투자자·종사자 간의 교류 활성화 목적으로 다기능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▶ 네트워킹, ▶ 교육·컨설팅, ▶ 온라인 플랫폼, ▶ 홍보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시설임.

- 서울핀테크랩(제3호)은 ▶ 해외 엑셀러레이터(Accelerator)³⁾ 프로그램 연계, ▶ 국내외 핀테크 기관, 투자사 네트워킹과 협업 지원, ▶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유망 핀테크 기업을 육성하고 핀테크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임.

○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의 설치 근거를 조례상에 마련하는 것은

3) 창업자들을 선발하여 육성, 집중 지원하는 관리체계를 말함.

해당 시설의 조성과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볼 수 있음.

- 그 밖에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(제2항),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등의 부과·징수(제3항),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(제4항), 등은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의 이용과 운영,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다만, 향후 서울시가 임차한 사유재산에 추가적인 시설 조성이 예상되는 만큼, 시설 이용자에 대한 ‘이용료’⁴⁾ 외에 ‘사용료’⁵⁾ 등을 함께 명시하여 세외수입 징수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.

아.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의 민간위탁(안 제18조)

- 안 제18조는 안 제17조제1항에 따른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의 효율적 관리·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의 근거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.
- 행정업무를 민간위탁하는 이유는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,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여

4) 이용료 : 수탁기관이 재산을 이용하는 자에게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을 말함(수영장 입장료, 문화회관 관람료 등).

5) 사용료 : 수탁재산 중 일부 수익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법령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함.

비용을 절감하며,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있음.

-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와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지원 등의 사무는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·능률성 등을 활용할 경우 사업효과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상에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자. 종합의견

- 여의도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만 10년이 되었지만, 국내 금융 중심지에 대한 국제적 평가와 인지도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⁶⁾, 아시아 금융중심지 역할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.
- 또한, 최근 5년간 국내 진입하는 외국계 금융기관이 정체되면서, 새로 진입하는 금융기관보다 철수하는 금융기관이 많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.⁷⁾
- 이에 정부는 핀테크 등과 같은 혁신금융서비스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규제 샌드박스⁸⁾와 핀테크 육성을

6) 2019년 국제금융센터지수(GFCI)평가에서 서울이 36위, 부산이 43위를 기록하며 2016년 서울이 14위를 기록한 이후 매년 순위가 하락하고 있음(금융위원회. 2020. 금융중심지 위상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연구).

7) 최근 3년간(2017~2019) 국내 외국계 금융기관의 진입은 17개, 철수가 23개로 철수 금융기관이 많은 상황임(2019.12월 기준, 금융감독원).

8) 신산업,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,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

포함한 ‘제5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(안)’ 을 지난 5월 발표한 바 있음.[참고자료]

- 개정안은 ▶ 혁신금융서비스의 해외 진출과 투자 유치 지원(안 제15조), ▶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의 조성 및 운영(안 제18조)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울의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.

담당 조사관	연락처
이시우	02-2180-8056

시켜주는 제도로,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 시작됐으며, 정부도 지난 1월부터 시행함.

[참고자료] 제5차 금융중심지 조성 발전 기본계획 주요 내용

「제5차 금융중심지 조성 발전 기본계획」 주요내용

□ 기본 방향

- 최근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중심지 정책 방향 도출
 - 홍콩 등 일부 금융중심지의 정치적·사회적 안정성 우려 및 국내외 전 반에 걸쳐 핀테크가 강조되는 등 금융환경이 급변
- 3대 추진과제* 마련을 통해 비교우위 분야를 중점 지원하는 동시에, 금융인프라 국제화 및 금융중심지 내실화에 주력

※ ①금융산업 비교우위 분야 중점 지원, ②금융인프라 국제화, ③금융중심지 지원 내실화

□ 주요 내용

- [과제1] 금융산업 비교우위 분야 중점 지원 : **핀테크** 혁신, **자 산운용** 시장, **공적기금** 해외투자 내실화
 - 「핀테크 혁신펀드」(4년간 3,000억원) 조성 등 투자 활성화 및 예산지원
 -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규제혁신의 선순환 구조 마련 등을 통해 핀테크 육성
- [과제2] 금융인프라 국제화 : 금융 관련 법 제도, 물적·인적 시스템 등
 -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 향상을 위한 금융규제 국제적합성 제고
- [과제3] 금융중심지 지원 내실화
 - 외국계 금융회사 경영·생활환경 개선 및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
 - 금융산업 변화를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 거버넌스 구축
- [기타] 국내 금융중심지 주요 전략 제시
 - (서울) 핀테크 인력 양성 및 창업공간 제공 지속 추진 및 금융산업의

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

- (부산) 해양 비즈니스 클러스터와 연계한 금융중심지 전략 추진 및
해양·과생분야 금융전문인력 양성 지속

[참고자료2] 관계법령

「지방자치법」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3. 21.>

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「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」

제12조의2(금융기관의 유치 및 집적 등을 위한 지원) ①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이 조에서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통한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국가는 시·도지사가 제1항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중심지의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
「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14조의2(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시·도지사의 자금지원) ① 시·도지사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국내 금융기관 및 외국 금융기관 등이 창업 등을 통하여 관할 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금융중심지로 신규진입(기존의 국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하는 데 필요한 사업용 설비의 설치자금
2. 그 밖에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

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세부지원기준,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